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용자지원 사업 공고(1차)

서울특별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 용자지원(건물부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장기 무이자 용자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사업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업규모: 30억 원(2025년 건물부문 용자금 70억 원 중)
- 신청기간(1차): '25. 1. 23.(목) ~ 4. 11.(금)까지(2차 추후 공고 예정)
 - ※ 용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접수
- 사업대상: BRP¹⁾(ZEB²⁾ 포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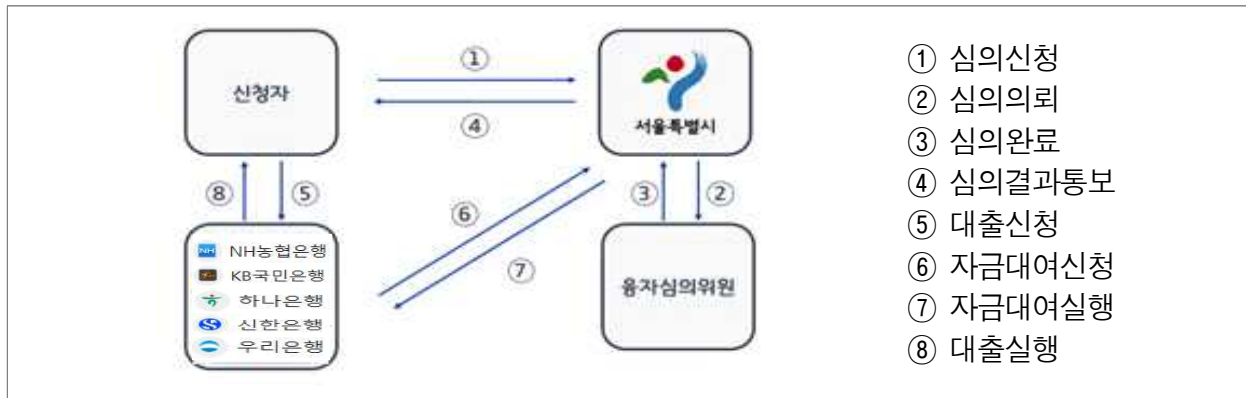
<지원 제외대상>

- ▶ 최근 3년 이내 동일 건물에 대한 동일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서울시 지원을 받은 건축물
- ▶ 신청인 기준 연간 건물 2개(주택 2채)로 한정 지원
- ▶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1)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2) ZEB(Zero Energy Building)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 **지원내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무이자로 융자지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 및 지원대상:** 건물 소유자, 건물 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³⁾)

< ESCO 사업자 지원조건>

- ▶ ESCO 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 ESCO 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 **지원조건:**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심의 후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추천(추천서 발급)을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 **지원비율:**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 이내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는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해당됨. (부가가치세 제외)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 지원한도

- BRP : 1천만 원 ~ 20억 원, 추천액은 10만 원 단위로 함
- ZEB*(인증완료):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 ※ ZEB 용자의 경우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전까지 ZEB 본인증을 획득할 것

○ 금융기관: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건물에너지효율화 용자금은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한 자금으로, 신청 전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

○ 대여금리: 연리 0%(고정금리),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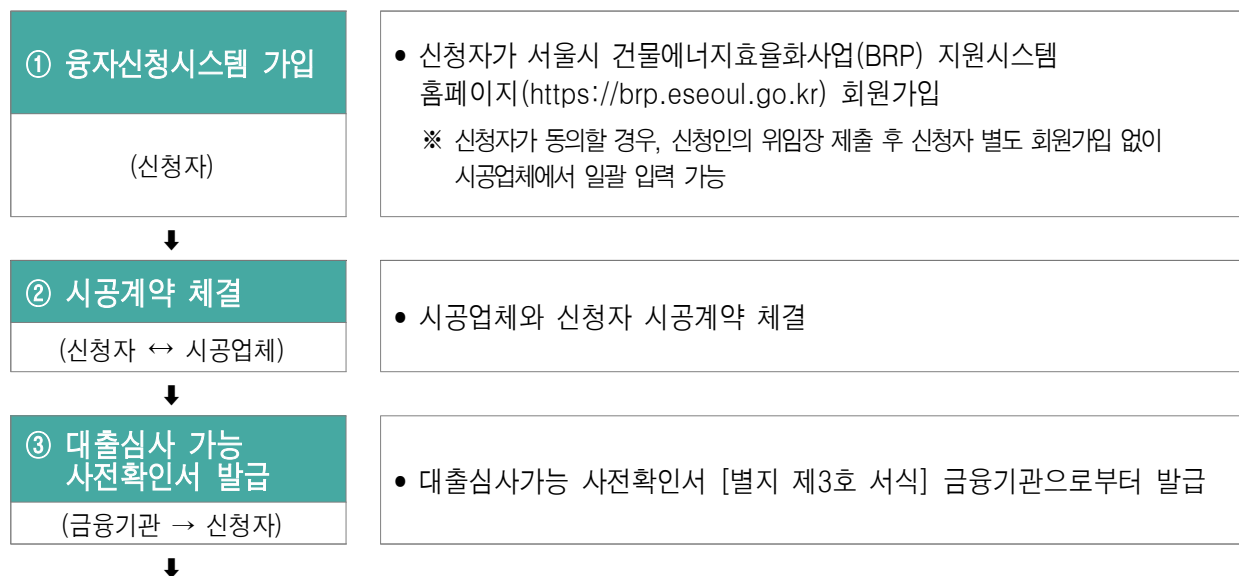
○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3년 이내 거치 가능)
- 상환 거치 기간은 연 단위로만 설정 가능, 분기별 상환

〈 운영기준 〉

- ✓ 용자추천 후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 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기타 관련 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1 심의신청

- 심의신청: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신청
- 신청일정: 지정된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마감
 - 용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 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공업체에서 일괄 입력 가능
- 심의일정: 월 1회 개최, 지정된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

회차	접수일시	심의날짜(예정)
1회	2025. 2. 14.(금) 18시까지	2025. 2. 26.(수)
2회	2025. 3. 14.(금) 18시까지	2025. 3. 26.(수)
3회	2025. 4. 11.(금) 18시까지	2025. 4. 23.(수)

※ 용자 심의일정은 신청 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의신청 **구비서류**(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PDF 파일로 업로드)

구 분	구비서류
필 수	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용자 신청서(별지1) ② 공사계약서 ③ 공사원가계산서(전체공사) 및 상세 시공내역서(별지7), 시공도면(건축물현황도 등) ④ 공사 전 사진(별지6-1)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2) ⑥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3) ⑦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⑧ 건축물대장 ⑨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⑩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도시가스 및 전기사용내역 제출)
필요시	① 시험성적서(단열재, 단열문, LED 조명 등 시공 시) ②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③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④ 신청인의 위임장(별지5) ⑤ 교체 전 기기내역(별지6-2)

2 대출신청

○ 대출신청 절차

- 공사 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완료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납품확인서 제출 → 현장 점검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금융기관 구비서류(방문 전 금융기관 문의)

구 분	금융기관	구비서류
건물 (ZEB포함)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① 신분증 ② 용자추천서 ※ 담보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5. 지원범위

○ 건축부문

- 단열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 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 창호에 한해 지원 (단, 1㎡ 미만 크기의 창호는 기준 적용 제외)
 - ※ 고정창·터닝도어·폴딩도어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단열덧창: 기존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외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m^2 \cdot K)$ 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m^3/h \cdot m^2$) 이하인 제품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단열재

-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 (2) 기존 단열재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구분	최소 사용기준
외단열	열관류율 $0.56\text{W}/\text{m}^2 \cdot \text{K}$ 이하(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text{W}/\text{m}^2 \cdot \text{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text{W}/\text{m}^2 \cdot \text{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열관류율 $1.13\text{W}/\text{m}^2 \cdot \text{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열관류율 $0.309\text{W}/\text{m}^2 \cdot \text{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 열전도율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 마감 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계부문

-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 관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 ▶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 가정용보일러(증발량 0.1톤/hr 또는 열량 61,900kcal/hr 미만) 제외
 - ※ 가스 연료 사용 기기 지원 제외
 - ※ 에너지효율 1등급 공기열 히트펌프 교체 시 지원 (단,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 적용)
 -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 전기부문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포함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 신재생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 이상 투자 시 지원
- 에너지 진단비(에너지 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유의사항

- 용자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용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용자 추천되었어도 지원 불가함.
- 용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 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 용자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 신청한 용자금은 용자금 심의과정에서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용자대상자는 서울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자는 용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용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별지 제8호 서식]을 사전에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용자 혜택을 받은 경우, 용자신청액은 기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 용자심의 전·중·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 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무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해당 신청자는 향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공업체와 계약한 건물은 융자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 사업자 포함)가 위반사항의 발생에 관련된 경우에는 [붙임1]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에 대하여 최대 2년간 사업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사업 참여제한 (경중에 따라 조치 최대 2년 이하)
2) 시공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후 절감 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털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융자지원 대상 항목 등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
-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 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름.

붙임 1 용자신청 참여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 용자신청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에너지성능개선공사
 - 다만, 시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 전에 서울시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가.설치공사 위반	시공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로서,	1차	2차 이상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6개월 참여제한 (50점)	1년 참여제한 (100점)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를 초과한 때	경고 (30점)	6개월 참여제한 (50점)
	3)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 이하인 때	주의 (10점)	경고 (30점)
나.추천신청 등 위반	1)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1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위반내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50점에 도달하면 6개월 참여제한, 100점에 도달하면 1년 참여제한 처분을 한다.

예) 2025.1.31. 주의, 2025.3.31.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2025.12.31. 이전에 경고를 받으면 10+30+30=70점으로 6개월 참여제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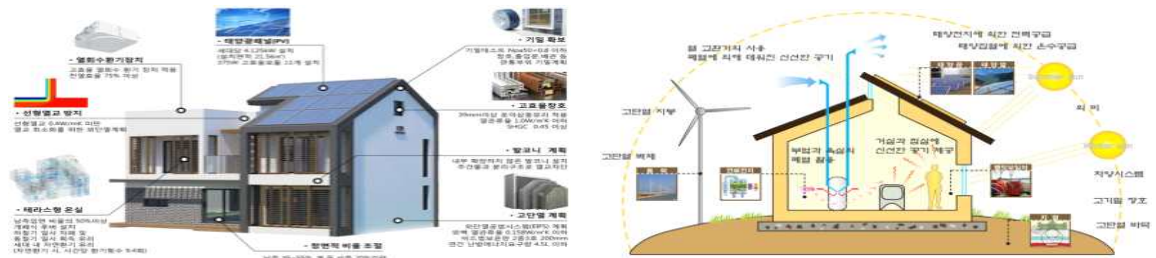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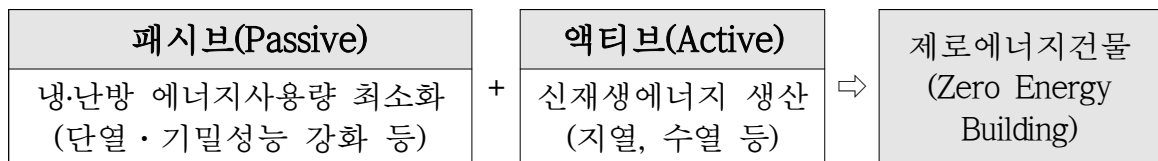
○ 구제제도

-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계획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는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에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

〈 제로에너지건물 개념 및 인증제도 〉

- ▶ (개념)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최소화



- ▶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BEMS 등)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제로 에너지등급
1 ⁺⁺ 등급* 이상 (최고1 ⁺⁺⁺ ~최저7등급) *최저 7등급 대비 80% 절감	100% 이상인 건축물	1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2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 (에너지자립률):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용자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 이용 목적 및 항목: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용자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상사항)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인적사항 및 거주 확인
건축물대장	주택조사
(전기,가스,지역난방)고객번호, 사용량, 사용요금 등	사업효과 분석 등 활용

2.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및 이용

3.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동의 시 사업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서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이엔에스, (주)귀뚜라미에너지, 예스코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전기,가스,지역난방)고객번호, 사용량, 주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 기간: 사업완료 후 5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건축주)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성명:

2. 대출희망금액: 원

3. 시공현장주소:

4. 시공업체명:

5. 신청부문

건 물			주 택		
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	☐	☐	☐	☐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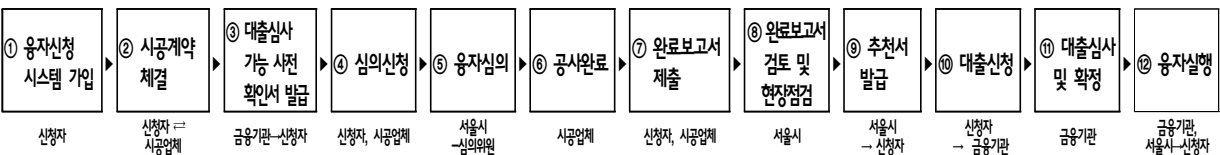
- 동 확인서가 대출 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 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는 대출 심사신청이 아니며, 융자추천 받은 후 대출 심사신청을 위해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지점장: (인)

<융자지원 절차>



*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1193)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시공업체)	사업자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2025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를 위한 일체의 행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에 관한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시공업체에 위임한 지원신청 사무 및 해당 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는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6-1호 서식]

공사 전 세부사진

☐ 건물 소재지:

☐ 건물 현황 사진

건물전면	건물후면
사진첨부	사진첨부
건물좌측면	건물우측면
사진첨부	사진첨부

☐ 위치별 사진 (도면의 위치별 번호 순서대로 작성, 공사부위 필수, 누락 시 지원 제외)

① 공사위치		② 공사위치	
사진첨부		사진첨부	
③ 공사위치		④ 공사위치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6-2호 서식]

교체 전 기기내역

☐ 건물 소재지:

☐ 기존 기기

교체 예정일: 2025년 월 일

대상 품목	제조사	모델명	제조일자 (YY-MM-DD)	제조번호 (S/N)	용량	구매 예정 모델명
냉난 방기	ooooo	AC130CN4FHH1PP (AC130BXAFHH1PP)	15-01-12	EPYSP3EC808470A	정격냉방 능력 (W) 14,500	AC130CN4FHH1PP (AC130BXAFHH1PP)
냉동기					용량 (RT)	
펌프					용량 (kW)	

☐ 철거 전 기존 기기 사진 (명판, 전경), 누락 시 지원 제외

① 전경	② 명판
사진첨부	사진첨부
○ 명판 사진은 반드시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 일자의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전경 사진은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설치 예정 장소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명판 사진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에 문의하여 '15.12월 이전 제조되었음을 확인받은 자료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시공내역서-리모델링〉

20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현장 주소
연면적(㎡)

공 급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자	상호명	
	대표자	(인)
	업태	
	전화번호	

□ 전체 공사비

항 목		단위	수량	총 시공비(원)
① 직접 공사비				
② 간접 공사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등	%		
③ 기업이윤		%		
...				
공급가액(①+②+③)				
부가가치세		%		
총 공사비(공급가액+부가세)				

총 시공비(원)
타 보조금(예정 포함)
용자신청액(부가가치세 제외)
*100,000원 미만 단위 절사

□ 시공 세부내역

공종		규격 및 제품명	단위	수량	재료비(1)		노무비(2)		합계(1+2)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건축부문	면적: ㎡ / 공사일수: 일								
	1-1 창호공사(1층 전면창)	S3-125-224FFGS1R5_R 2,600*1,440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24mm 단창, 로이, 아르곤	ea	1						
	1-2 창호공사(1층 우측창)	S3-125-224FFGS1R5_R 2,600*1,440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24mm 단창, 로이, 아르곤	ea	1						
	1-3 단열공사 (준불연단열재)	PE보드 90t, 가등급	㎡							

	1-4									
	1-5									
	1-6									
	1-7									
[소 계]										
2	전기부문									
	2-1 LED공사(1층)	LF9602LSEWOW (고효율, 60W)	ea							
	2-2 LED공사(1층)	EQ-EPL-06464-050DK (고효율, 50W)	ea							
	2-3 LED공사(2층)	LF9602LSEWOW (고효율, 60W)	ea							
	2-4									
	2-5									
[소 계]										
3	신재생에너지 등									
	3-1									
	3-2									
	3-3									
	3-4									
	3-5									
[소 계]										
4	기타									
	4-1 히트펌프	IWK-12C-74	대	1						
	4-2									
	4-3									
	4-4									
	4-5									
[소 계]										

사업 (변경,취소) 신청서

1. 지원사업명: 2025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용자지원사업
2. 신청인(생년월일):
3. 연 락 처:
4. 대 상 지:
5. 변경내용

변경항목	기존 신청내역	변경 신청내역

6.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위 사유로 2025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사업(BRP)에 대한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완료보고서

1. 신청현황

신 청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재 지	(전화)		
시 설 개 선 사 항	☐ 단열창호 ☐ 단열재 ☐ LED 조명 ☐ 기타()	변경여부 (시설내역포함)	[] 기존 [] 변경
총 사 업 비	₩ (전체 공사비용 기재)	변경여부	[] 기존 [] 변경
응 자 신 청 액	₩ (10만 원 미만 절사)	변경여부	[] 기존 [] 변경
사 업 기 간	. . ~ . . (개월)	변경여부	[] 기존 [] 변경
구 비 서 류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 신청내역 변경 시 변경된 시공내역서 첨부			

2. 사업내용

개선허목	교체비용	교체수량	비고
단열창호			
단 열 재			
LED 조명			
기 타			
계			

3-1. 교체 사진(교체된 위치 일체 첨부)

장소 및 내용	1층 -1 (모델명: , 규격:)		
사업 전	사업 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 첨부필수	
사진 첨부(컬러사진)	사진 첨부(컬러사진)	사진 첨부 (컬러사진)	
장소 및 내용	1층 -2 (모델명: , 규격:)		
사업 전	사업 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 첨부필수	
사진 첨부(컬러사진)	사진 첨부(컬러사진)	사진 첨부 (컬러사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항목별 사업 전 · 후의 사진 첨부

3-2. 단열재, LED 교체 사진(교체된 위치 일체 첨부)

장소 및 내용	1층 벽단열 (모델명: , 규격:)		
사업 전	사업 중 ※ 첨부필수	사업 후	
사진 첨부(컬러사진)	사진 첨부(컬러사진)	사진 첨부(컬러사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항목별 사업 전 · 중 · 후의 사진 첨부

※ 현장 납품사진 첨부

4. 시공업체

- 상 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 소재지: _____
- 대표자: _____ (담당자 _____ /연락처 _____)

년 월 일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용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항목별 제품 품질 확인방법>

항목	확인방법	참고
단열창호	단열창호 전면 프레임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확인	
단열재	시공 중 단열재 두께를 확인하고, 단열재 표면에 부착된 제품정보 라벨 확인	
LED 조명	조명 등 몸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 확인	
	컨버터 외장형(내장형) 램프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확인	

※ 사업계획서에 기입한 모델명과 실제 시공한 모델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